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89 발의연월일: 2020. 12. 17.

발 의 자:백종헌·김용판·지성호

이주환 · 서일준 · 장제원

이종배 • 전봉민 • 구자근

박완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하여 이중 혜 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예비군대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수행중의 예비군대원,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비 군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보상금
- 3. 제9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 ②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군보상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생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2)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 또는 민간의료시설-----. <단 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 서 삭제> 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 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하거 나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 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예비군대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수행중의 예비군대원, 군인 , 군무원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 는 예비군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 보상금
-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보상금
- 3. 제9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 ②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 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 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군보상심 의회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